

こうとうがっこうとうしゅうがくし えんきん かん しよるいいちらん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に関する書類一覧
へいせい ねん がつ ねん がつぶん しゅうがくし えんきん
(平成30年7月～平成31年6月分の就学支援金)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에 관한 서류 일람
(2018년 7월 ~ 2019년 6월분 취학지원금)

1.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制度のお知らせ (P2-P3)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제도에 관한 알림 (P2-P3)
2. 就学支援金確認票 (P4-P5) ‘
취학지원금 확인표 (P4-P5)
3.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受給資格認定申請書・収入状況届出書 (別紙)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수입 상황 신고서(별지)
4. 3의「記入例」(別紙)
3의 “기입 예”(별지)
5. 封筒 봉투

ていしゅつぎげん へいせい ねん がつ にち
提出期限：平成30年 7月 日 ()

제출 기한 : 2018년 7 월(月) 일(日)

- 書類がそろいましたら、お早めにご提出ください。
서류가 갖추어지면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期限までに提出できない場合は、必ず事務室までご連絡ください。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꼭 사무실에 연락해 주십시오.

ふめい てん かながわけん こうとうがっこう じむしつ でんわ
ご不明な点は、神奈川県 高等学校 事務室 電話 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궁금하신 것은 가나가와현 고등학교 사무실 전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のお知らせ

【ご確認ください】

平成30年7月以降の就学支援金の対象世帯については、「都道府県民税所得割と市町村民税所得割の合計額」（以下、「税額※」と表記）で判断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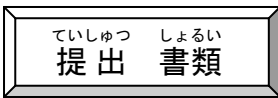
ただし、対象となる世帯に変更はありません。

【平成30年度の税額※が、50万7,000円未満の方】

下記の①～③の書類をご提出ください。提出期限までにご提出がないと、平成30年7月～31年6月分の授業料をご負担いただくこととなりますので、必ず提出してください。

【平成30年度の税額※が、50万7,000円以上の方】

下記の「① 就学支援金確認票」のみを配付の封筒に入れて提出してください。
後日、授業料の納付のお知らせを送付いたします。



ご提出は、配付の封筒に入れて厳封の上、事務室に直接提出するか、事務室あて郵送してください。

- ① 就学支援金確認票
- ②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受給資格認定申請書・収入状況届出書
- ③ 所得に関する書類（次の書類のうちいずれか）
保護者2名（父母）が税額※を課税されている場合は、父母それぞれの書類が必要です。

（源泉徴収票は税額※が確認できないので、受け付けておりません。）

配偶者控除が確認できる場合は、配偶者の方の所得に関する書類は必要ありませんが、税額※が「50万2,000円」以上の場合は、配偶者の方の所得に関する書類（ア～ウ）のいずれかの書類が必要になります。

- ア 平成30年度市町村民税・県民税特別徴収税額通知書のコピー
- イ 平成30年度市町村民税・県民税税額決定・納税通知書のコピー
- ウ 平成30年度市町村民税・県民税課税（非課税）証明書^{の原本又はコピー}
- エ 生活保護受給証明書^{の原本}（平成30年1月1日時点で生活保護を受給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もの）

就学支援金の支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世帯の方でも、申請が遅れたり、申請をしなかった場合は、支給が受けられず、授業料を納付していただくこととな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参考 授業料 全日制：年額118,800円、定時制：32,400円）。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제도의 알림

【확인하십시오】

2018년 7월 이후의 취학지원금 대상 세대에 관해서는 “도도부현 소득세할 주민세”와 “시정촌 소득할 주민세”의 합계액(이하 “세액※”으로 표기함)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단, 대상이 되는 세대는 변경이 없습니다.

【2018년도 “세액※”이 50만 7,000엔 미만인 분】

아래의 ①~③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2018년 7월~2019년 6월분 수업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꼭 제출하십시오.

【2018년도 “세액※”이 50만 7,000엔 이상인 분】

아래의 “① 취학지원금 확인표”만을 배부된 봉투에 넣어 제출하십시오. 추후 수업료 납부의 알림을 송부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하실 때는 배부된 봉투에 넣어 엄봉하고,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① 취학지원금 확인표
- ②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수입 상황 신고서
- ③ 소득에 관한 서류 (다음 서류 중 하나)
보호자 2명(부모)이 “세액※”이 과세되어 있는 경우는 부모 각각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원천 징수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확인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서류는 필요 없지만 “세액※”이 ‘50만 2,000엔’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한 서류 (ㄱ~ㄷ)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ㄱ 2018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특별 징수세액 통지서 사본
- ㄴ 2018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 사본
- ㄷ 2018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과세(비과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 ㄹ 생활 보호 수급 증명서 원본 (2018년 1월 1일 시점에서 생활 보호 수급이 확인 가능한 서류)

취학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세대라도 신청이 늦어지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어 수업료를 납부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십시오.
(참고 수업료 전일제 : 연 금액 118,800엔, 정시제 : 연 금액 32,400엔)

しゅうがくし えんきんかくにんひょう
就学支援金確認票

ふりがな

せいとしめい とう ねん くみ ばん
生徒氏名 _____ クラス等 _____ 年 組 番

ほごしゃしめい れんらく さき
保護者氏名 _____ 連絡先 _____

ないよう かくにん ばあい れんらく れんらくさき きさい
*内容の確認を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ので、連絡のつく連絡先を記載してください。

「お知らせ」をお読みいただき、申請や提出書類に漏れがないか、この確認票の
□にチェックをして、高校の事務室までご提出（郵送）してください。

ほごしゃ しんけんしゃ ぜんいん ぜいがく まん えんみまん
1 保護者（親権者）全員の税額※が50万7,000円未満ですか？

□ 50万7,000円未満のため、就学支援金の届出（申請）をします。

→「2-1」へ進んでください。

□ 50万7,000円以上のため、就学支援金の届出（申請）をしません。

→「3」へ進んでください。

つぎ しょうい どうふう ふうとう い ていしゅつ
2-1 次の書類を同封の封筒に入れて提出してください。

① □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受給資格認定申請書・収入状況届出書

② 所得に関する書類 次のいずれか

保護者（親権者）が父母の場合は双方が提出する書類にチェックしてください。

ア □ 平成30年度市町村民税・県民税特別徴収税額通知書のコピー

イ □ 平成30年度市町村民税・県民税税額決定・納税通知書のコピー

ウ □ 平成30年度市町村民税・県民税課税（非課税）証明書の原本又はコピー

エ □ 生活保護受給証明書の原本（平成30年1月1日時点で生活保護の受給を確認でき

るもの。ただし、2-2の対象となる方は、平成30年7月1日以降の発行日付のもの）

③ □ 就学支援金確認票（本用紙）

2-2 高校生等奨学給付金（※）の受給対象となる方

※ 非課税世帯又は生活保護受給世帯の場合に、返還不要の給付金が受けられる
場合があります（別途申請が必要です。）。

□ 今回提出したア～エのいずれかの書類により高校生等奨学給付金申請の

審査をすることを承認します。

つぎ しょうい どうふう ふうとう い ていしゅつ
3 次の書類を同封の封筒に入れて提出してください。

□ 就学支援金確認票（本用紙）

ていしゅつ きげん へいせい ねん がつ にち
提出期限 平成30年 7 月 日

がっこうしゅうじゅいん
学校收受印

취학지원금 확인표

후 리 가 나
학 생 성 명 _____ 반 등 학년 반 번

보호자 성명 _____ 연 락 처 _____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알림”을 읽으시고 신청서와 제출 서류에 누락이 없는지 이 확인표 □에 체크하여
고등학교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우편으로 제출) 바랍니다.

- 1 보호자(친권자) 전원의 “세액※”이 50만 7,000엔 미만입니까?
 50만 7,000엔 미만이므로 취학지원금을 신고(신청)합니다.
→“2-1”로 진행하십시오.
 50만 7,000엔 이상이므로 취학지원금을 신고(신청)하지 않습니다.
→“3”으로 진행하십시오.

2-1 다음 서류를 동봉된 봉투에 넣어 제출하십시오.

- ①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수입 상황 신고서
② 소득에 관한 서류 다음 중 하나
보호자(친권자)가 부모인 경우는 양쪽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하십시오.
ㄱ 2018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특별 징수세액 통지서 사본
ㄴ 2018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세액 결정·납세 통지서 사본
ㄷ 2018년도 시정촌민세·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ㄹ 생활 보호 수급 증명서 원본 (2018년 1월 1일 시점에서 생활 보호 수급이
확인 가능한 서류. 단, 2-2 대상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발행된 것.)
③ 취학지원금 확인표 (본 용지)

2-2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 수급 대상자

- ※ 비과세 세대 또는 생활보호수급 세대인 경우에는 반환 불요한 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ㄱ~ㄹ의 서류 중 하나로 고등학생등장학급부금 신청을 심사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3 다음 서류를 동봉된 봉투에 넣어 제출하십시오.

- 취학지원금 확인표 (본 용지)

제출 기한 2018년 7 월(月) 일(日) 학교 수수 인(印) _____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수입 상황 신고서의 “기입 예”
 굵은 선 테두리 안에만 기입해 주십시오.

様式第1号 (第3条第1項、第10条第2項並びに第11条1項及び第2項関係)

굵은 테두리 안을 기입

平成 30 年 月 日

神奈川県立〇〇〇〇〇〇学校長 殿

こうとうがっこうとうしゅうがくしえんきん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受給資格認定申請書 (初回時)
 高等学校等就学支援金 (以下「就学支援金」といいます。) の受給資格の認定を申請します。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첫 번째)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이하 “취학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収入状況届出書 (2回目以降)
 既に受給資格認定を受けているため、就学支援金の支給に関して、保護者等の収入の状況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届け出ます。

수급 자격이 이미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해 보호자들의 수입 상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이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고, 취학지원금 지급을 받았을 경우는, 부정 이득의 징수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以下の空欄に生徒本人が署名してください。保護者等による代筆も可能です。記入に当たっては、別紙の「記入上の注意」及び「留意事項」をよく読んでから記入してください。)

ふりがな	かながわ	いちろう
生徒の氏名	姓 神奈川	名 一郎

生徒の生年月日	昭和 平成 13 年 5 月 22 日
生徒の住所	〒 231 - 8588 神奈川県 横浜市 中区日本大通 33
保護者等の連絡先	090 (〇〇〇〇) 〇〇〇〇
生徒が在学する学校の名称	神奈川県立〇〇〇〇〇〇学校

【1. 高等学校等の在学期間について】

①現在の学校の在学期間	学校名 神奈川県立 〇〇〇〇〇〇学校	平成 29 年 4 月 1 日 ~ (うち支給停止期間等)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月 日	学校の種類・課程・学科 高等学校 (〇〇制)
②過去の学校の在学期間	学校名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月 日 (うち支給停止期間等) 平成 年 月 日 ~平成 年 月 日	学校の種類・課程・学科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고등학교 등(수학 연한이 3년 미만인 학교는 제외합니다.)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
 ·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정시제·통신제 등은 4분의 3으로 계산)이 통산해 36 개월을 초과한 사람(다만 취학지원금의 지급 정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쓴 날짜를 기입

어느 하나 □안에 L표를 하십시오.
 수급 자격이 이미 인정되어 있는 분은 아래의 “수입 상황 신고서”에, 아직 인정되지 않은 분은 위의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에 L를 기입하십시오.

다음 2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신 후에 □안에 L표를 하십시오

학생의 성명과 ‘후리가나’를 기입
 ·학생 본인이 기입
 보호자에 의한 대필도 가능

학생의 생년월일을 기입

학생의 주소를 기입

낮에 연락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입하십시오.

입학하는 학교명과 과정을 기입
 高等学校(全日制)
 高等学校(定時制)
 高等学校(通信制)

과거에 고등학교 등에 재학했던 경우는 여기에 기입

뒷면도 기입해 주십시오.

【2. 保護者等の収入の状況について】

【2. 보호자 등의 수입 상황에 관하여】

(1) 취학지원금 지급 시기의 구분

4월~6월 (29年度の課税証明書等の添付) 7월~6월 (30年度の課税証明書等の添付)

(2) 7월 1일 시점에서의 보호자 등의 상황 및 첨부하는 과세증명서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4월 1일 시점 보호자 등의 상황 및 첨부하는 과세증명서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다음의 보호자 등의 과세증명서를 첨부합니다.

①	<input type="checkbox"/> 친권자(부모) 2명분	양친 모두 “시정촌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 받고 있는 경우 (일본 국내에서의) 단신 부임인 경우에도 친권자 2명 분을 제출하십시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친권자 1명분	(親権者が、一時的に親権を行う児童相談所長、児童福祉司は、④から⑦までのいずれかの口にレ印を付けてください。)
	<input type="checkbox"/>	친권자의 1명이 공제 대상 배우자이고 “시정촌 소득할 주민세”가 과세되었다고 해도 소득 제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②	<input type="checkbox"/>	친권자의 1명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등으로 “시정촌 소득할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 이혼, 사별 등으로 친권자가 1명인 경우 · 친권자가 존재하지만 가정 폭력이나 양육 포기, 실종 등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친권자 중 1명의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등
③	<input type="checkbox"/>	미성년 후견인 <input type="checkbox"/> 명분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미성년 후견인이 복수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전원 분) (미성년 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또는 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는 그 사람을 제외한다.)
④	<input type="checkbox"/>	학생의 생계를 그 수입에 의해 유지하고 있는 사람(주된 생계 유지자) 1명 분 ·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성인에 이르고 있지만 주된 생계 유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
⑤	<input type="checkbox"/>	학생 본인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며, · 성인에 이르고 있는 경우 · 미성년이지만 “시정촌 소득할 주민세”가 과세되는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등

①에서 ⑦까지의 어느 하나 □안에 레표를 하십시오.

친권자가 없고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는 그 인원수를 기입하십시오.

(2)-2 다음 이유로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⑥	<input type="checkbox"/>	소득 확인 대상이 학생 본인(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또는 주된 생계 유지자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미성년이고 “시정촌 소득할 주민세”가 과세되는 정도의 수입이 없는 경우
⑦	<input type="checkbox"/>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주된 생계 유지자 또는 학생 본인 전원이 과세 기일에 일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시정촌 소득할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보호자 등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⑥ 또는 ⑦에 레표를 한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氏名	生徒との続柄	氏名	生徒との続柄
神奈川 太郎	父	神奈川 花子	母

과세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본인의 성명과 학생과의 관계를 기입하십시오.

※ 보호자 상황 등이나 수입 상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 보호자 등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이혼·사별·양자결연 등)
· 수입 상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수입의 수정 신고나 세액 결정 결정에 따른 “시정촌 소득할 주민세” 변경 등)

【3. 確認事項】 【3. 확인하십시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안에 레표를 하십시오.
 취학지원금을 수업료에 충당하는 것, 그리고 취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무 절차를 학교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안에 레표를 하십시오.

学校受付日 平成 年 月 日 (学校において記入)